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3. 7. 19 선고 2023가단2107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3. 6. 28.

판 결 선 고 2023. 7. 19.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D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22. 1. 17.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D에게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등기계 2022. 1. 19. 접수 제12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차전15139호로 양수금 3,432,854원 및 그중 2,607,978원에 대하여 2021.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지급명령이 2021. 6. 18. D에게 송달되고, D이 이의하지 않아 2021. 7. 3. 확정되었다.

나. D은 별지 목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1.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1997. 12. 26.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된 제천시 E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D은 2022. 1. 19. 기준 원고에 대한 양수금채무 외에도 F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10,000,000원, 국세청에 대하여 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 외에는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사단법인 G,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D에 대한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고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 성립한 채권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65161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D이 무자력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은 1993년경 피고의 자금으로 건축하였으나, 피고가 동생인 D에게 모든 업무 처리를 위임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D 명의를 빌려 건축주로 등록하게 된 것일 뿐, 이 사건 건물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책임 재산이라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된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모친과 함께 거주해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자금을 부담하고 이를 원시취득한 후 D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D이 자신 소유 건물에 피고와 모친의 무상거주를 허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사해행위인 D과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새미